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sunenv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9호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징계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이건치	1943.04.15.	(주)감정평가법인 경무 경기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등록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피아이(주)(조정훈)

나. 전화번호 : ① 063-545-5458

2. 명칭 :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한 내화충전재 일체형 종이슬리브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기술의 요지>

종이슬리브는 건축물의 시공시에 전기배선, 배수, 통기 등을 목적으로 바닥이나 벽체에 구멍을 형성하여 주는 원통형 설비소재로 가정에서 버리는 폐지 재활용소재로 제조한 원형형태의 종이관에 연소시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슬리브 내부에 내화충전재가 삽입되어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되는 석유화학원료로 생산되는 PVC관을 대체하는 친환경 복합신소재 제조 기술이다.

또한, 재활용소재 활용으로 고갈자원 사용이 없으며 내화충전재 일체형으로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이후 하층부에서 추가시공이 필요치 않아 공사기간 단축효과 뿐만 아니라 분실 및 누락, 고소작업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량소재로 인해 시공성 및 가공성이 뛰어나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탁월한 기술이다

<범위>

건축물 벽체 및 바닥 시공에서 배관 및 배선, 통기 등의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슬리브 공법으로 슬리브 내부에 내화충전재가 삽입되어 종래기술의 문제점이었던 이중시공, 안전위험, 공기 증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근로강도 개선을 실현한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7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본 당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선정되어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가점이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